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1-21호

「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2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을 세워주고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다.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9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

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juntae0819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